



2020. 5. 15. FRI



법원행정처

목 차

contents

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08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812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817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20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82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829
내규	법원표창내규 일부개정내규	831
예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837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841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844
신법령 목록		846

인사

850

공지사항

855

규칙

●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공포)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 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 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u>」 제21조에 따른 <u>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u>----- -----.</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u>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u></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p>
<p>제3조(구성) <u>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u></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u> 1. <u>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u> 2. <u>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u> 3. <u>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u> ③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현행

개정안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4조(회의)

①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3호 2020. 5. 1. 공포)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를 “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의 사람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5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인사”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개 정 안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 ② ~ ③ (생략)
-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 5인 이상 20인 이하-----.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② -----
----- 위원장과 부위원장 -----
-----.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 ① -----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삭제>

현행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1. ~ 5. (생략)
- 6. 지리·토목·도시계획·설계·구조·기계·전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기타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②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개정안

제5조(위원)

①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1. ~ 5. (현행과 같음)
- 6. -----
-----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조경 등 -----

7. 그 밖에 -----
--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 3. 심의안건 및 내용
- 4. 의결 결과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4호 2020. 5. 1. 공포)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 중 “제7호 가목 및 나목”을 “제7호 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단서 중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 단서 중 “제7호 가목·나목 및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다목”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사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범위)	제2조(업무범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민사집행법」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	<삭제>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민사집행법」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삭제>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가목 및 나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1. ----- ----- ----- ----- ----- ----- ----- 제7호가목 ----- -----.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	12. ----- ----- ----- ----- ----- ----- ----- 제9호가목 및 다목 ----- -----

현행	개정안
<p>다.</p> <p>13. 「민사집행법」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 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u>제7호 가목·나목 및 제9호 가목 내지 다목</u>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p> <p>14. ~ 21. (생략)</p>	<p>--.</p> <p>13. ----- ----- ----- ----- ----- 제7호가목 및 제9호가목· 다목----- -----.</p> <p>14. ~ 21. (현행과 같음)</p>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5호 2020. 5. 1. 공포)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목 및 본문의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하고, 본문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로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p> <p>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u>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재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p> <p>-----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 ----- 기록 ----- ----- 기록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 ----- 기록 -----, ----- 기록 -----, ----- 기록 -----.</p>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6호 2020. 5. 1.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고등법원장 및 수원고등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본문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를 적용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보고, 제17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5조의3제4항 중 “3인 이상 7인 이하”를 “3인 이상 12인 이하”로, “지명한다.”를 “지명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 단서 중 “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를 “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로 한다.

제53조의2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2. 일반임기제공무원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통	(1) 소속 4급·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3)의 전보권 및 위 (4)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겸임권 (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1) 소속 4급·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원장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① ~ ② (생략) ③ 각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 및 수원고등법원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한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관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임용추천할 수 있다.</p>	<p>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고등법원장----- ----- ----- ----- ----- -----.</p>
<p>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u>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u> <u><신설></u></p>	<p>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① <u>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항 본문,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를 적용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보고, 제17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으로 한정한다.</u></p>
<p>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p>	<p>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1. ~ 2. (생략)

<신설>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법원 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채용시험과 8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③ (생략)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 입 자	위 임 사 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u>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u>	
고등 법원장 특허 법원장	공동	(1) 소속 4급·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u>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u>
	고등 법원 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u>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u>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

개 정 안

1. ~ 2. (현행과 같음)

3.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2.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 입 자	위 임 사 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u>및 겸임권</u> (2)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u>및 겸임권</u> (2) 소속 6급 이하 <u>일반직의 임용권</u>	
고등 법원장 특허 법원장	공동	(1) 소속 4급·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u>및 겸임권</u> (2) 소속 6급 이하 <u>일반직의 임용권</u>
	고등 법 원 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u>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 승진임용권. 다만, <u>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u>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7) 생략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 승진임용권. 다만, <u>서울고등법원</u>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겸임권 (7) 생략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공통	(1) 소속 4급·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u>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u> 의 임용권. 다만, 지원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1) 소속 4급·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다만, 지원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다만, 지원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방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에 한정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에 한정한다.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7호 2020. 5. 1.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u>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u>,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u>,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u>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u>, ----- --.</p> <p>③ (현행과 같음)</p>

내규

◎ 법원표창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19호 2020. 4. 29. 결재)

법원표창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내규에 따른 표창은”을 “표창은”으로 하고,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을 “뚜렷하거나”로 하며,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6조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법원 내규”를 “대법원내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항의”를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항 부터 제9항 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비치하고”를 “비치하고,”로 한다.

제16조 중 “피표창사실을”을 “표창한 사실을”로 하고, 같은 조 “계재토록 한다.”를 “계재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공적상과 창안상을 받은 사람”을 “표창 받은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다]와 별지 제2호 서식[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다)]

표 창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본 문

년 월 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 법원장)

○ ○ ○

이 증을 제 호로서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 법원장) 표창부에 기입함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 ○ 법원)

총 무 과 장 ○ ○ ○

[별지 제2호 서식(다)]

상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본 문

년 월 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장)

○ ○ ○

이 증을 제 호로서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장) 상장부에 기입함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

총 무 과 장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표창대상) <u>이 내규에 따른 표창은</u>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u>내·외국인 또는</u> 각종 교육·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u>사람에게</u> 수여한다.</p>	<p>제2조 (표창대상) <u>표창은</u> ----- ----- <u>뚜렷하거나</u> ----- ----- <u>자에게</u> -----.</p>
<p>제3조 (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u>다음의</u> 4종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p>	<p>제3조 (표창의 종류) ① ----- <u>다음 각 호의</u>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 (공적상) 공적상은 <u>다음의</u> 경우에 수여한다. 1. ~ 2. (생략)</p>	<p>제6조 (공적상) ----- <u>다음 각 호의</u> -----. 1. ~ 2. (현행과 같음)</p>
<p>제7조 (창안상) ① (생략) ② 창안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u>대법원 내규로</u> 정한다.</p>	<p>제7조 (창안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법원내규로</u> -----.</p>
<p>제12조 (각급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u>전항의</u> 보고는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을 시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1조 <u>제7항</u> 부터 <u>제9항</u>까지는 제1항의 위원회에 준용한다.</p>	<p>제12조 (각급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의</u> ----- ----- -----. ⑤ ----- <u>제7항부터 제9항</u>까지는 ----- -----.</p>

현 행

제15조 (표창부등)

표창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창부·상장부·감사장부를 각 비치하고 표창을 하였을 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부에, 우수상은 상장부에, 협조상은 감사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표창기관은 피표창사실을 각 보도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법원공보에 게재토록 한다.

제17조 (인사기록)

공적상과 창안상을 받은 사람의 인사기록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다)]

표	창	장			
		소 속 성	속 급 명		
본 문					
년 월 일					
(사법연수원장 ○ ○ 법원장 법원공무원장 교육원장)		○	○	○	
이 증을 제 호로서	(사법연수원장 ○ ○ 법원장 법원공무원장 교육원장)		표창부에 기입함		
(사법연수원 ○ ○ 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총 무 과 장	○	○	○

개 정 안

제15조 (표창부등)

----- 비치하고 -----

제16조 (홍보)

----- 표창한 사실을 -----
----- 게재하
다 -----

제17조 (인사기록)

표창 받은 자-----

[별지 제1호 서식(다)]

표	창	장			
		소 속 성	속 급 명		
본 문					
년 월 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 법원장)		○	○	○	
이 증을 제 호로서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 법원장)		표창부에 기입함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 ○ 법원)					
		총 무 과 장	○	○	○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다))		(별지 제2호 서식(다))	
상	장	상	장
	소속성		소속성
	속급명		속급명
본문		본문	
년 월 일		년 월 일	
$\begin{pmatrix} \text{사법연수원장} \\ \bigcirc \bigcirc \text{법원장} \\ \text{법원공무원장} \\ \text{교육원장} \end{pmatrix}$	○ ○ ○	$\begin{pmatrix} \text{사법연수원장} \\ \text{사법정책연구원장} \\ \text{법원공무원교육원장} \\ \text{법원도서관장} \\ \bigcirc \bigcirc \text{법원장} \end{pmatrix}$	○ ○ ○
이 증을 제 호로서	$\begin{pmatrix} \text{사법연수원장} \\ \bigcirc \bigcirc \text{법원장} \\ \text{법원공무원장} \\ \text{교육원장} \end{pmatrix}$	상장부에 기입함	이 증을 제 호로서
	$\begin{pmatrix} \text{사법연수원} \\ \bigcirc \bigcirc \text{법원} \\ \text{법원공무원} \\ \text{교육원} \end{pmatrix}$		$\begin{pmatrix} \text{사법연수원} \\ \text{사법정책연구원} \\ \text{법원공무원교육원} \\ \text{법원도서관} \\ \bigcirc \bigcirc \text{법원} \end{pmatrix}$
	총무과장	○ ○ ○	총무과장
			○ ○ ○

예규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2호 2020. 4. 29.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보안·보안경비”를“보안관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보안·보안경비”를“보안관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안·보안경비”를“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보안경비”를“보안관리”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을“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법원 간의”를“법원 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72조제1호”를“제72조제1호 단서”로 하고, “각호”를“각 호”로 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p>	<p>----- -----.</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 ② (생략)</p>	<p>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을 제외</u>한 각 고등법원 관내 <u>지방법원간의</u> 5급 이하 일반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p>	<p>③ <u>서울고등법원</u>----- ----- <u>법원 간</u>----- -----.</p>
<p>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생략)</p>	<p>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u>각호</u>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원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원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p>	<p>② ----- <u>제72조제1호 단서</u>----- ----- <u>각 호</u>----- -----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⑥ <u>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원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u></p>

●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3호 2020. 4. 29. 결재)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2. 라. 2) 가) (3) (가) 중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임기제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평가의 평가자(Ⅷ. 2. 가. 관련)

평 가 대 상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1호부터 3호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소속 기관장	법원행정처장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4호 및 5호와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및 나급	소속 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6호 내지 9호와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다급부터 마감까지	소속 담당관·과장	소속 실·국장

※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6호부터 9호까지와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다급부터 마감까지에 대한 평가자 중 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의 경우 1차 평가자는 소속과장이고, 2차 평가자는 지원 사무국장이며,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의 경우 1차 평가자는 사무과장이고, 2차 평가자는 본원 사무국장임.

※ 관리위원의 1차 평가자는 관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II. 근무성적평정</p> <p>1. (생략)</p> <p>2.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p> <p>가. ~ 다. (생략)</p> <p>라.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절차</p> <p>1) (생략)</p> <p>2)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p> <p>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p> <p>(1) ~ (2) (생략)</p> <p>(3) 위원회 구성</p> <p>(가)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u>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u></p>	<p>II. 근무성적평정</p> <p>1. (현행과 같음)</p> <p>2.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절차</p> <p>1) (현행과 같음)</p> <p>2)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p> <p>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위원회 구성</p> <p>(가) ----- ----- --- <u>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u></p>

◎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24호 2020. 4. 29. 결재)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는”을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으로 하고, “윤리감사관실 소속 판사는”을 “윤리감사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법원 법관의 주요 신상정보와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6. 각급 법원 사무국장은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사용자 권한	제4조 사용자 권한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및 인사총괄 심의관실 소속 판사는 전국 법원의 법관, 사법연수생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 보와 법관의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 력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및 윤리감사관실 소속 판사는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재 산등록(변동)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 다.	3. ----- 인사총괄 심의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 ----- ----- 윤리감사관실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 위원회 소속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업 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법원 법관 의 주요 신상정보와 근무평정을 열람 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신설>	6. 각급 법원 사무국장은 소속 일반직 등 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 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신법령 목록

(2020. 4. 16. ~ 4. 3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6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19733	2020. 4. 17.	4
대통령령제3061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6
대통령령제306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10
대통령령제3062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35	2020. 4. 21.	4
대통령령제3062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06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625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062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062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38	2020. 4. 24.	4
대통령령제30631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19740	2020. 4. 28.	5
대통령령제30632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63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0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063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63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63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0638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9740	2020. 4. 28.	15
대통령령제3063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64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0641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	57
대통령령제3064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064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3064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064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	74
대통령령제306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0647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1
대통령령제3064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064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3065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17
대통령령제30651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24
대통령령제3065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	"	125

총리령

총리령제161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32	2020. 4. 16.	3
총리령제160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7
총리령제161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40	2020. 4. 28.	134

부령

보건복지부령제71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33	2020. 4. 17.	11
환경부령제86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국토교통부령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	26
국토교통부령제71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6
국토교통부령제71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57
기획재정부령제79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35	2020. 4. 21.	12
기획재정부령제79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기획재정부령제79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중소벤처기업부령제2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
교육부령제209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736	2020. 4. 22.	4
교육부령제21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19737	2020. 4. 23.	4
보건복지부령제72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국토교통부령제71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해양수산부령제39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9
보건복지부령제72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38	2020. 4. 24.	9
보건복지부령제72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토교통부령제72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교육부령제211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39	2020. 4. 27.	3
국방부령제101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3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해양수산부령제40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39	2020. 4. 27.	6
법무부령제97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40	2020. 4. 28.	137
국방부령제101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8
행정안전부령제17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3
고용노동부령제28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7
여성가족부령제15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41	2020. 4. 29.	5

인사

인사발령 법 제68호

2020. 4.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연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섭	판사에 연임함
	”	김현석	”
	”	신종열	”
	”	윤종섭	”
	”	이광영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
	”	오상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
	”	정문성	”
	”	정완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박영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박범석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만호	판사에 연임함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익경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판사에 연임함
	"	박해빈	"
	"	성충용	"
	"	이수영	"
	"	이승철	"
	"	임영우	"
	"	장철익	"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자현	"

(2020. 5.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69호

2020. 4.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덕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3.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25.부터 2020. 8. 1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8.부터 2021. 3. 12.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27.부터 2020. 7. 24.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유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18.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민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4.부터 2020. 7. 3.까지 휴직을 명함
	"	송해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27.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11.부터 2021. 2. 5.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오현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2.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기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0. 5. 1.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1.부터 2020. 7. 12.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호동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5. 23.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주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5. 6.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5. 6.부터 2021.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솔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2020. 5. 11.자) 끝.

공지사항

◎ 4월 신착 법률도서·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4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404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96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2019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2019
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2019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20
3	東亞法學 v.86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20
4	民主法學 v.72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20
5	法曹 v.2020-1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20
6	法曹春秋 v.2019 / 서울辯護士會 서울통합변호사회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20
7	釜山法潮 v.37 / 부산지방변호사회	釜山地方辯護士會	2020
8	서강법률논총 v.9-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9	서울法學 v.27-4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20
10	亞州法學 v.13-4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9
12	외법논집 v.44-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3	統一과 法律 v.41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4	判例研究 v.33-2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地方辯護士會	2019
15	漢陽法學 v.69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20
16	홍익법학 v.21-1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20
17	こども六法 / 山崎聡一郎	弘文堂	2019
18	(どうなってるんだろう?)子どもの法律: 一人で悩まないで! / 山下敏雅	高文研	2017
19	(どうなってるんだろう?)子どもの法律: 一人で悩まないで!. Part II / 山下敏雅	高文研	2019
20	はじめまして 法学: 身近なのに知らなすぎる「これって法的にどうなの?」 / 遠藤研一郎	ウェッジ	2019
21	もしも世界に法律がなかったら: 「六法」の超基本がわかる物語 / 木山泰嗣	日本実業出版社	2019
22	ジェンダー法学入門 / 三成美保	法律文化社	2019
23	法の概念 / Hart, H. L. A	みすず書房	2019
24	法社會學 v.83 / 日本法社會學會	有斐閣	2017
25	法社會學 v.84 / 日本法社會學會	有斐閣	2018
26	法社會學 v.85 / 日本法社會學會	有斐閣	2019
27	(弁護士のための)公布法律インデックス: 2018 / 第一法規編集部	第一法規	2019
28	比較法研究 v.81 / 比較法學會	有斐閣	2019
29	比較法雜誌 v.53-1 / 日本比較法研究所	日本比較法研究所	2019
30	比較法雜誌 v.53-2 / 日本比較法研究所	日本比較法研究所	2019
31	声の法社会学 / 西田英一	北大路書房	2019
32	歴史の精神を感じながら: 金子武嗣著作集 / 金子武嗣	日本評論社	2019
33	立教法學 v.101 / 立教法學會	有斐閣	2020
34	立教法學 v.102 / 立教法學會	有斐閣	2020
35	立憲主義という企て / 井上達夫	東京大学出版会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6	裁判の書 / 三宅正太郎	日本評論社	2019
37	(評伝)法学博士星野通先生: ある進歩的民法・民法典研究者の学者人生 / 川東埜弘	日本評論社	2019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8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法制度受容の研究: 中国王朝と朝鮮三国の影響関係を中心に / 鄭東俊	早稲田大学出版部	2019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9	(2019년도) 사업체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2019
40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41	경제규제와 법 v.12-2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9
42	관광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연구 /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2019
43	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9
44	기업의 창업·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9
45	노동판례리뷰, 2019 /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2020
46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2019
4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I: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안을 중심으로 /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2019
4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II: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2019
49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지역고용 충격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 고용정책 방향 연구 /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2019
50	생애말기 의료(복지)의 가치와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 안동인	한국법제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1	서비스업 야간노동: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2019
52	선진국의 일터혁신 정책과 함의: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사례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53	스포츠와 법 v.23-1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20
54	양곡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9
55	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 /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9
56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2019
57	의료급여법령집: 2020년 / 한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2020
58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9
59	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2019
60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 김현중	한국노동연구원	2019
61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 오문성	한국법제연구원	2019
62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 김동수	세경사	2019
63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II: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분야를 중심으로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2019
64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관한 분석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2019
65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66	한국 대학 고용구조의 포용적 재구성 모색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2019
67	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 전훈	한국법제연구원	2019
68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연구 /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2019
69	エネルギー産業の法・政策・実務 / 友岡史仁	弘文堂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0	ゼロからの不動産学講義 / 相川眞一	創成社	2019
71	(ゼロからはじめる)建築の〈法規〉入門 / 原口秀昭	彰国社	2019
72	ミャンマー不動産法の理論と実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20
73	金融商品取引法の開示規制 / 久保幸年	中央経済社	2019
74	保育小六法: 2019 /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2019
75	社会福祉小六法: 2019 /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9
76	相續税法規通達集: 令和元年7月1日現在 / 日本税理士會連合會	中央経済社	2019
77	所得税法規集: 令和元年7月1日現在 / 日本税理士會連合會	中央経済社	2019
78	(薬機法・再生医療法に基づく)再生医療等製品及び特定細胞加工物に係る業許可・更新申請等の手引き: 再生医療に携わる国内外の企業・医療機関のために / 再生医療イノベーションフォーラム	誠文堂新光社	2019
79	(日本一やさしい)税法と税金の教科書: 知識ゼロからでもスラスラわかる / 西中間浩	日本実業出版社	2019
80	自家用電気工作物必携, 1: 法規手続篇 / 関東東北産業保安監督部	文一総合出版	2019
81	(最新)金融商品取引法講義 / 松岡啓祐	中央経済社	2019
82	学校法 / 佐々木幸寿	学文社	2019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3	(2019년) 테러정세 및 (2020년) 전망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2020
84	국제 통상·투자 법제연구, I /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2019
85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2019
86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 CPTPP, USMCA를 중심으로 / 고준성	한국법제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7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2019-06호: 국제해사기구(IMO)의 기후변화 대응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 동향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9
88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연구: 중국의 시범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윤성혜	한국법제연구원	2019
89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약 이행 분석 연구 / 박미선	한국법제연구원	2019
90	脫석탄 정책 및 법제연구: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박시원	한국법제연구원	2019
91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제 규범 연구 /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2019
92	EU法基本判例集 / 中村民雄	日本評論社	2019
93	グローバル化する〈正義〉の人類学: 国際社会における法形成とローカリテ / 細谷広美	昭和堂	2019
94	ベーシック条約集: 2019 / 田中則夫	東信堂	2019
95	ロシア-タタルスタン権限区分条約論 / 小杉末吉	中央大学出版部	2019
96	(改正入管法で大きく変わる)外国人労働者の雇用と労務管理 / 布施直春	中央経済社	2019
97	国際機構論入門 / 山田哲也	東京大学出版会	2018
98	国際法 / 大沼保昭	筑摩書房	2018
99	国際取引における準拠法・裁判管轄・仲裁の基礎知識 / 大塚章男	中央経済社	2019
100	難民該当性の実証的研究: オーストラリアを中心に / 浅川晃広	日本評論社	2019
101	未だ占領下にある日本の是非を問う: 日米地位協定を自衛隊元幹部が告発する / 池田整治	コスミック出版	2019
102	米軍基地権と日米密約: 奄美・小笠原・沖縄返還を通して / 信夫隆司	岩波書店	2019
103	世界万国の平和を期して: 安達峰一郎著作選 / 安達峰一郎	東京大学出版会	2019
104	(研究者・留学生のための)アメリカビザ取得完全マニュアル / 大藏昌枝	羊土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05	人道支援は誰のためか：スーダン・ダルフルの国内避難民社会に見る人道支援政策と実践の交差 / 堀江正伸	晃洋書房	2018
106	(日本×フィリピンで実現する)究極のデュアルライフ / 坂元康宏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2019
107	自衛隊加憲論とは何か：日米同盟の深化と文民統制の崩壊の果てに / 瀬瀬厚	日本機関紙出版センター	2019
108	再審請求「東京裁判」 / 名越弘	白桃書房	2019
109	海外取引の成否は「契約」で9割決まる / 菊地正登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0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이석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11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12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3	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남북현안법제연구 /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4	미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쟁점과 최근의 변화 / 임기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15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법 기초연구. II /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6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사법정책연구원	2020
117	인권법평론 v.24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118	人權報告書 v.2019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20
119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김현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20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관한 연구 / 강일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2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2019
122	헌법상 평등보장과 간접차별금지 / 이재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23	헌법재판소판례집 v.31-2-1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20
124	헌법재판소판례집 v.31-2-2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20
125	憲法裁判研究 v.30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9
126	호주의 입헌주의와 연방대법원의 역할 / 김선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27	これからの天皇制と道徳教育を考える：過去の歴史を直視し 日本国憲法を根っこに据えて / 岩本努	あけび書房	2019
128	アメリカ憲法の考え方 / 丸田隆	日本評論社	2019
129	(オールカラーマンガで楽しくわかる)日本国憲法：そもそも憲法ってなんなの!? / 川岸令和	ナツメ社	2019
130	カール・シュミットとその時代 / 古賀敬太	みすず書房	2019
131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入門：図解×Q&A / 羽室英太郎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
132	国民国家と憲法 / 石川晃司	三和書籍	2019
133	(基本に学ぶ)憲法 / 植野妙実子	日本評論社	2019
134	反-憲法改正論 / 佐高信	KADOKAWA	2019
135	部落差別解消推進法を学ぶ / 奥田均	解放出版社	2019
136	比較憲法 / 東裕	弘文堂	2019
137	私の憲法勉強：嵐の中に立つ日本の基本法 / 中野好夫	筑摩書房	2019
138	象徴としての日本国憲法：日本国憲法創案 / 深田哲士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2019
139	生命倫理学：自然と利害関心の間 / Birnbacher, Dieter	法政大学出版局	2018
140	選択的夫婦別姓：予想される大混乱 / 平野まつじ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41	(世界一わかりやすい)日本憲政史: 明治自由民権激闘編 / 倉山満	徳間書店	2019
142	数学書として憲法を読む: 前広島市長の憲法・天皇論 / 秋葉忠利	法政大学出版局	2019
143	安倍「4項目」改憲の建前と本音 / 上脇博之	日本機関紙出版センター	2018
144	人權の世界地図 / Fagan, Andrew	丸善出版	2019
145	日本国憲法を学ぶ / 橋本基弘	中央経済社	2019
146	日本国憲法: 大阪おばちゃん語訳 / 谷口真由美	文藝春秋	2019
147	(逐条解説)国会法・議院規則. [1]: 国会法編 / 森本昭夫	弘文堂	2019
148	(逐条解説)国会法・議院規則. [2]: 参議院規則編 / 森本昭夫	弘文堂	2019
149	脱属国論 / 田原総一郎	毎日新聞出版	2019
150	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の現在史: 統制される言論とジャーナリズムから遠ざかるメディア / 田島泰彦	日本評論社	2019
151	「核の時代」と憲法9条 / 大久保賢一	日本評論社サービスセンター	2019
152	憲法 / 大林啓吾	法学書院	2019
153	憲法の普遍性と歴史性: 辻村みよ子先生古稀記念論集 / 辻村みよ子	日本評論社	2019
154	憲法ルネサンス: 個性'生きざまから再発見 / 共同通信社編集委員室	インパクト出版会	2018
155	憲法学の病 / 篠田英朗	新潮社	2019
156	憲法学読本 / 安西文雄	有斐閣	2018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57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사법심사 / 전은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58	민간투자 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2019
159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2019
160	土地補償法研究 v.20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161	公文書管理と民主主義：なぜ公文書は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 瀬畑源	岩波書店	2019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62	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캐나다를 중심으로 /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2019
163	성범죄백서 v.1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20
164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이선미	사법정책연구원	2020
165	仮釈放の理論：矯正・保護の連携と再犯防止 / 太田達也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166	(面白いほど理解できる)刑法 / 早稲田経営出版	早稲田経営出版	2019
167	犯罪学入門：ガバナンス・社会安全政策のアプローチ / 小林良樹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168	犯罪行動の心理学 / Bonta, James	北大路書房	2018
169	司法・犯罪心理学 / 桐生正幸	北大路書房	2019
170	司法・犯罪心理学 / 岡本吉生	遠見書房	2019
171	囚人と狂気：一九世紀フランスの監獄・文学・社会 / 梅澤礼	法政大学出版局	2019
172	冤罪女たちのたたかい / 里見繁	インパクト出版会	2019
173	情動と犯罪：共感・愛着の破綻と回復の可能性 / 小野武年	朝倉書店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4	刑法ポケット判例集 / 井田良	弘文堂	2019
175	刑事手続における犯罪被害者の法的地位 / 椎橋隆幸	中央大学出版部	2019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6	保險法研究 v.14-1 / 韓國保險法學會	韓國保險法學會	2020
177	(2019年)株主總會の準備實務・想定問答 / 日比谷パーク法律事務所	中央經濟社	2019
178	(Q&A企業再編のための)合併・分割・株式交換等の實務: その法律・会計・稅務のすべて: 平成31年3月改訂. I / 仰星監査法人	清文社	2019
179	(Q&A企業再編のための)合併・分割・株式交換等の實務: その法律・会計・稅務のすべて: 平成31年3月改訂. II / 仰星監査法人	清文社	2019
180	(ここまで使える!)自己信託&一般社団法人を活用した資産承継・事業承継 / 松尾陽子	日本法令	2018
181	アメリカ会社法における株主の会社情報の収集權: 模範事業会社法の改正の経緯を中心に / 澤山裕文	専修大学出版局	2019
182	(プライマリー)商法総則・商行為法 / 藤田勝利	法律文化社	2019
183	企業グループの經營と取締役の法的責任: Corporate group management and director's liability / 島田公明	中央經濟社	2019
184	企業統治と会社法の經濟学 / 細江守紀	勁草書房	2019
185	米国会社法の実務Q&A: デラウェア州会社法に基づく設立・運營 / 竹田公子	中央經濟社	2019
186	事業報告記載事項の分析: 2019年6月總會会社の事例分析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20
187	(商業登記實務から見た)合同会社の運營と理論 / 立花宏	中央經濟社	2019
188	(設例で学ぶ)オーナー系企業の事業承継・M&Aにおける法務と稅務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89	(新)株主總會實務なるほどQ&A / 三菱UFJ信託銀行法人 コンサルティング部	中央經濟社	2019
190	(令和元年)改正会社法, 1: 中間試案´要綱´新旧対照表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20
191	株主總會のポイント: 株式實務 / 三井住友信託銀行証券代 行コンサルティング部	財經詳報社	2019
192	株主總會想定問答集: 2020年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20
193	株主總會取締役会監査役会の議事録作成ガイドブック / 三井住友信託銀行証券代行コンサルティング部	商事法務	2019
194	株主總會判例インデックス / 本村健	商事法務	2019
195	招集通知・議案の記載事例: 2020年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20
196	(最新)会社法がよくわかる本 / 遠藤誠	秀和システム	2018
197	合同會社の法制度と税制 / 葭田英人	稅務經理協會	2019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98	(2019)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결과보고서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199	(The) Jury under Fire: myth, controversy and reform / Bornstein, Brian H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20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2020
201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 중앙 경영연구소	법원행정처	2020
202	사법 v.51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20
203	(ケース別)株式会社・有限会社の役員変更登記の手続: 改 正会社法´改正商業登記規則に完全対応! / 永淵圭一	日本法令	2019
204	競売不動産の教科書 / 山田純男	プラチナ出版	2019
205	公務員弁護士のすべて / 岡本正	第一法規	2018
206	民事再生實踐マニュアル / 軸丸欣哉	青林書院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07	民事執行・保全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20
208	法律文書作成の基本 / 田中豊	日本評論社	2019
209	法律英語と紛争処理: 民事訴訟手続, ADR, 倒産手続他 / 長谷川俊明	第一法規	2019
210	法学部ゼミガイドブック: ディベートで鍛える論理的思考力 / 西南法学基礎教育研究会	法律文化社	2019
211	弁護士・法務人材就職・転職のすべて / 野村慧	第一法規	2019
212	蟬脱の検察官 / 加藤康榮	法学書院	2019
213	裁判官が答える裁判のギモン / 日本裁判官ネットワーク	岩波書店	2019
214	最高裁に告ぐ / 岡口基一	岩波書店	2019
215	特捜は「巨悪」を捕らえたか: 地検特捜部長の極秘メモ / 宗像紀夫	ワック	2019
216	行政書士のためのマーケティングギア / シグマ	第一法規	2019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17	民事反对尋問のスキル: いつ,何を,どう聞くか? / 京野哲也	ぎょうせい	2018
218	民事訴訟法 / 伊藤塾	弘文堂	2019
219	弁護士の現場力, 民事訴訟編: 事件の受任から終了までのスキルと作法 / 高中正彦	ぎょうせい	2018
220	(事件処理のプロになるための)民事弁護ガイドブック / 東京弁護士会法友全期会	ぎょうせい	2019
221	(実例と経験談から学ぶ)資料・証拠の調査と収集: 実践弁護士業務 / 第一東京弁護士会第一倶楽部	第一法規	2019
222	(自力で勝ち取る)訴訟は本人で出来る /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23	あなたが変える裁判員制度： 市民からみた司法参加の現在 / 大城聡	同時代社	2019
224	起訴前・公判前整理・裁判員裁判の弁護実務 / 日本弁護士連合会刑事調査室	日本評論社	2019
225	東住吉冤罪事件：虚偽自白の心理学 / 村山満明	岩波書店	2019
226	(面白いほど理解できる)刑事訴訟法 / 早稲田経営出版	早稲田経営出版	2019
227	十手・捕縄事典：江戸町奉行所の装備と逮捕術 / 名和弓雄	雄山閣	2019
228	刑事弁護の基礎知識 / 岡慎一	有斐閣	2018
229	刑事訴訟法講義 / 安富潔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30	火付盗賊改：鬼と呼ばれた江戸の「特別捜査官」 / 高橋義夫	中央公論新社	201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해정	사법정책연구원	2020
232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 기록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233	(いちばんわかりやすい)家族信託のはなし: 相続・事業承継・認知症対策のための / 川壽一夫	日本法令	2019
234	(いちばんわかりやすい)相続・贈与の本 / 曾根恵子	成美堂出版	2019
235	(いっきにわかる!)身近な人が亡くなった後の手続き: 新相続法対応 / 平林亮子	洋泉社	2019
236	(これで困らない!)自分でできる遺言書: 作成の手引き / 江崎正行	二見書房	2019
237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誹謗中傷: 法的対策マニュアル / 中澤佑一	中央経済社	2019
238	(コンメンタール)借地借家法 / 稻本洋之助	日本評論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9	ナビゲート民法: 契約社会を賢く生きるための14章 / 田中康博	北大路書房	2019
240	家裁・日本機械学会との格闘: 裏街道男の司法府への緊急提言「百聞は一見に如かず」 / 真の司法改革	パレード	2018
241	(改正民法と新収益認識基準に基づく)契約書作成・見直しの実務 / 横張清威	日本法令	2018
242	境界の理論と実務 / 寶金敏明	日本加除出版	2018
243	交通法研究 v.48 / 日本交通法學會	有斐閣	2020
244	交通事故事件弁護学入門 / 高山俊吉	日本評論社	2019
245	(宅建業者のための)民法改正ガイドブック: 不動産取引に役立つ契約書改定のポイント: 民法改正が不動産実務をこれだけ変える! / 立川正雄	にじゅういち出版	2019
246	(図解による)民法のしくみ / 神田将	自由国民社	2019
247	物権法・担保物権法 / 吳明植	弘文堂	2019
248	民法改正がわかった / 田中嗣久	法学書院	2019
249	民事執行及び民事保全制度における供託実務: 事例に基づく執行供託を中心に / 森野誠	日本加除出版	2018
250	(法務担当者のための)契約実務ハンドブック / 辺見紀男	商事法務	2019
251	(法務部員のための)契約業務マニュアル: 改正民法対応 / 河村寛治	第一法規	2019
252	保證のトラブル相談Q&A: 基礎知識から具体的解決策まで / 新潟県弁護士会	民事法研究会	2019
253	不動産登記実務総覧 / 寺島健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9
254	事業再生と債権管理 v.167 / 金融財政事情研究會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20
255	(事項別)不動産登記のQ&A210選: 表示・所有権保存/移転・更正・相続・抵当権・抵当証券・信託登記等 / 日本法令不動産登記研究会	日本法令	2019
256	相続で成功するポイントは不動産のプロが知っている! / 大澤健司	現代書林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57	(実践!!)契約書審査の実務: 修正の着眼点から社内調整のヒントまで / 出澤総合法律事務所	学陽書房	2019
258	(実践)一般社団法人・信託活用ハンドブック: 相続贈与・資産管理・事業承継対策に役立つ! / 白井一馬	清文社	2019
259	医療訴訟と要件事実 / 伊藤滋夫	日本評論社	2019
260	(精神科医のアドバイスとともにおさえる)離婚相談&受任の心得: 弁護士アラタの事件録 / 田畑淳	第一法規	2019
261	地代家賃(権利金・敷金・保証金・承諾料)更新料・立退料: 賃貸不動産の「お金」のすべてがわかる / 安西勉	自由国民社	2018
262	借家をめぐる66のキホンと100の重要裁判例: 家主と借家人とのヤッカイな法律トラブル解決法 / 宮崎裕二	プロGRESS	2019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제도 현황과 전망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2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4: 정기실태점검을 통해서 본 기록관리 개선방안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3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5: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4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6: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 사례 및 시사점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5	초독서: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인 필독서 32 / 김효주	유노북스	2019
6	1분 생활 상식: 상식으로 두뇌의 숨은 힘을 깨워라 / 한글말모이 연구회	별글	2019
7	정법을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2 / 진정	정법시대	2019

[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백만장자 습관 / 링거, 로버트	좋은땅	2019
9	FBI 관찰의 기술: 몸의 신호로 상대를 꿰뚫어 보는 실전 매뉴얼 / 내버로, 조	리더스북	2019
10	(지루한 관계와 답답한 일상에 찌든 현대인을 위한) 매일 10분 마음수업 / 차희연	베프북스	2019
11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2만 건의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30초 만에 불안감을 없애는 법 / 다카무레 겐지	센시오	2019
12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생각법 / 미칼코, 마이클	트로이목마	2019
13	제대로 생각하는 기술: 1cm 더 생각하는 힘 / 기야마 히로쓰구	교보문고	2019
14	방탄 사고: 걱정, 무기력,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해독제 / 히르슈하우젠, 에카르트 폰	은행나무	2019
15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사람을 얻는 마법의 대화 기술 56 / 혼, 샘	갈매나무	2019
16	설득의 심리학, 2: Yes를 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 / 치알디니, 로버트	21세기북스	2015
17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뇌과학이 밝혀낸 인생을 바꾸는 14가지 무의식 / 하시가이 고지	포레스트북스	2019
18	슈퍼노멀: 역경을 인생의 기회로 바꾼 우리 이웃의 슈퍼맨들 / 제이, 맥	와이즈베리	2019
19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잠재력부터 성격, 섹스취향까지 외모로 알 수 있는 모든 것 / 시부야 쇼조	센시오	2019
20	퇴사 후 비로소 나다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역명의 스물다섯, 직장인 공감 에세이 / 김가빈	스노우폭스북스	2019
21	하버드 심리 수업: 오직 하버드에서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와 성공 노하우 / 리잉	이티	2019
22	10대를 위한 그림: 청소년을 위한 꿈과 자신감의 비결 / 사이드, 매슈	다산에듀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 슈타우딩거, 니콜	갈매나무	2019
24	사는 게 귀찮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걸음인 사람들을 위한 성공처방전 / 신체로, 쟈	홍익	2019
25	그래서 캐주얼 / 안병민	책비	2019
26	나쁜 감정 정리법: 고민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 에노모토 히로아키	21세기북스	2019
27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9가지 기술 / 체르노프, 마크	토네이도	2019
28	나는 왜 자꾸 눈치를 볼까?: 열네 살부터 시작하는 첫 자신감 수업 / 케이, 캐티	리듬문고	2019
29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 / 코스기 토시야	홍익	2019
30	(처음 만나는) 우니히피리: 안녕! 내 안의 진정한 나 / 휴렌, 이하레아카라	지식의숲	2019
31	(처음 만나는) 호오포노포노: 나를 위한 삶의 실천 / 휴렌, 이하레아카라	지식의숲	2019
32	소심해도 잘나가는 사람들의 비밀: 인생이 술술 풀리는 긴장 제로의 심리학 / 나이트 요시히토	알에이치코리아	2019
33	적당한 거리 두기의 기술: 불편한 사람과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의 힘 / 명대성	팬덤북스	2019
34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내 사람, 내 인생을 지키는 관계 맺기의 기술 / 유카와 히사코	심플라이프	2019
35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다만 다를 뿐: 존중해 주세요 가까워도 남이잖아요 / 이성동	좋은책만들기	2019
36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다: 힘겨운 시간과 마주하고 얻은 지혜 / 김가희	미다스북스	2019
37	(풍요의 마스터에게 듣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 2 / 레븐슨, 레스터	정신세계사	2019
38	스물, 너는 너처럼 살아보기로 했다 / 아홉시	와이에치미디어	2019
39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 유태형	프로작북스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0	올어바웃바디 / 이낙림	치웃	2018
41	부자가 보낸 편지: 돈보다 더 위대한 유산 / 혼다 켄	책이있는풍경	2019
42	하루 한 줄 행복: 3초 만에 미소 짓게 되는 100개의 문장 / 히스이 고타로	한국경제신문	2019
43	이천 년의 공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 맹자를 읽는다 / 조운재	위즈덤하우스	2019

[종교]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4	마흔의 공허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 장재형	유노북스	2019
45	카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 / 윤홍식	봉황동래	2019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9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47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00년: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선집 /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
48	경찰백서 v.2019 / 경찰청	경찰청 (내무부 치안본부)	2019
49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2019
50	교육통계연보 v.2019 / 한국, 교육부	교육부	2019
51	국민권익백서 v.2019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20
52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2019
53	데이터 산업의 노동시장 분석 /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54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2019
55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6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현황 및 임금공개 기대효과 /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2019
57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집. I / 한국.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2020
58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집. II / 한국.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2020
59	일터혁신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2019
60	청년 삶의 질 연구. II: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2019
61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연구: 고용서비스 /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2019
6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7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9
63	村役人のお仕事 / 山崎善弘	東京堂出版	2018
64	平和研究 v.50 / 日本平和學會	早稲田大学出版部	2018
65	디지털 미니멀리즘: 덜 위크를 뛰어넘는 삶의 원칙 / 뉴포트, 갈	세종	2019
66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창비	2019
67	요즘 여자: 여자의 물건이 의미하는 것들에 관해 / 도현영	버튼박스	2019
68	돈의 진리 / 사이토 히토리	알에이치코리아	2019
69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 사쿠라가와 신이치	경원북스	2019
70	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 홍진표	김영사	2019
71	(30분 이상 앉아있기 어려워도 합격하고 싶은) 산만한 사람을 위한 공부법 / 김웅준	김영사	2019
72	공부는 어떻게 내 삶을 바꾸었나: 전교 꼴찌, 판사 되다 / 이종훈	북카라반	2019
73	(디지털 노마드 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미래학교 / 박희진 신건철 최선경 오우진 정동완	미디어숲	2019
74	10대, 인생을 바꾸는 진로 수업 / 김은희	미다스북스	2019
75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 / 홀리데이, 라이언	흐름	2019

[언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6	영포자 문과장은 어떻게 영어 달인이 됐을까: 돈 없고 시간 없어도 영어가 되는 기적의 공부 습관 / 문성현	넥서스books	2019
77	매일 1시간 씩 보면 톡 나오는 영어 공부법 / 성재원	베프북스	2019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8	업종별 직무등급제 개발: 공공부문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2019
79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걸치레와 지갑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50가지 방법 / 시부	홍시커뮤니케이션	2019
80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사춘기 소녀 성장 매뉴얼 / 위타, 크리스티나 드	리듬문고	2019
81	연애대장: 사랑은 아날로그다 / 손종관	쉽	2019
82	그레이트 그레이: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어른을 위한 안티 에이징 라이프 플랜 / 지성언	라운북	2019
83	나이 들의 기술: 단단하지만 활기분하게 중년 이후를 준비한다 / 호사카 다카시	상상	2019
84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 물건과 공간, 인생을 디자인하다 / 윤정훈	다연	2019
85	엄마의 자존감 공부: 천 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 김미경	21세기북스	2019
86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나서 뒤늦게 시작한 부모 반성 수업 / 정재영	웨일북	2019
87	일어서라! 서서 일하고, 서서 공부하라!: 공병호의 스탠딩 데스크 100% 활용법 / 공병호	공병호연구소	2019
88	아웃라이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 글래드웰, 말콤	김영사	2019
89	일 잘하는 사람의 8가지 비밀: 먼저 승진한 동료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 김기호	치웃	2019
90	학력을 허물고 자신만의 꿈을 짓다: 세상은 넓고 학교는 좁다 / 김영상	북오션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91	나를 찾는 46가지 질문: 대한민국 20대 3000명의 인생을 바꾼 강의 / 김희교	가나	2019
92	공부의 품격: 지성인을 위한 지극히 짧고도 사소한 공부의 기술 / 나단	리텍 콘텐츠	2019
93	식스 해빗: 내 삶에 남겨야 할 6가지 인생 습관 / 버처드, 브렌든	웅진지식하우스	2019
94	유대인 생각공부: 유대인을 세계 1%로 만든 생각의 원칙 / 쉰	마일스톤	2019
95	분투력: 끝내 목표에 도달하는 힘 / 에이믹스, 스콧	미래의창	2019
96	같은 스물 다른 인생: 삼성에서 길을 찾다 / 이동희	이안	2019
97	작은 승리의 법칙: 성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 이성민	나무와열매	2019
98	어쩌다 도구: '될 수밖에 없는 tools' / 이재덕	태인문화사	2019
99	마흔 전에 일천재가 되는 40가지 법칙 / 정병익	다른상상	2019
100	긍정적 일탈주의자: 내 안의 탁월한 말썹꾸러기 해방시키기 / 지노, 프란체스카	한국경제신문	2019
101	쓴다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일과 관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쓰기의 마법 / 후루카와 다케시	비즈니스북스	2019
102	일처리가 빠른 사람들의 시간 관리 비밀 / 도지 가즈야	유노북스	2019
103	나는 왜 항상 시간에 쫓길까: 실속 없이 바쁜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법 / 생산성개선회의	시그마북스	2019
104	일은 즐기고 삶은 즐기는 완벽한 직장인: 사장 마인드로 일하는 업무 비법 33 / 최민기	Raon book	2019
105	뭘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의 비밀: 왜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할까? / 줄스, 룩	홍익	2019
106	어제보다 더-. 나답게 일하고 싶다 / 박앤디	북클라우드	2019
107	(팀원을 제대로 지도하고 상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팀장을 위한 보고서 검토 기술 / 김철수	새로운 제안	2019
108	부장님은 내 기획서가 쓰레기라고 말했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읽는 기획서 소생술 / 박혁중	행복한북클럽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09	당신은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까?: 끌리는 사람에겐 이유가 있다 / 김범준	홍익	2019
110	미친 속도 PDCA: 완벽하게 초스피드로 일하는 법 / 토미타 카즈마사	페가수스	2019
111	생각정리기획력: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힘 / 복주환	천그루숲	2019
112	기획의 인문학 / 홍경수	해의시간	2019
113	인생리더: 역사 속에서 리더를 만나다 / 강관수	KSAM	2019
114	90년생과 어떻게 일할 것인가: 세대 차 문제를 해결하는 리버스 멘토링 / 최경춘	위즈덤하우스	2019
115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경 속 리더들의 사람을 얻는 인문학 리더십 / 최동욱	태인문화사	2019
116	꽃히는 말 한마디: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23가지 대화 스킬 / 존스, 필 M.	생각의날개	2019
117	(반드시 전달되는) 메시지의 법칙: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말은 따로 있다 / 바버, 캠	라이팅하우스	2019
118	떨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법: 15분 만에 300억을 따내는 대한민국 1호 프리젠티어의 발표는 무엇이 다를까? / 최현정	라운북	2019

[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9	検事の信義 / 柚月裕子	KADOKAWA	2019
120	(책 한 권 똑딱!) 따라 쓰기의 기적 / 송숙희	유노북스	2019
121	(하루 1시간,) 책 쓰기의 힘: 나는 책이 아닌 책 쓰기로 인생을 바꿨다 / 이혁백	치웃	2019
122	결정적인 순간 힘을 발휘하는 최강의 말하기: 소통 전문가 손영주가 알려주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비법 / 손영주	나비의활주로	2019
123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3마디로 말한다 / 오수향	위즈덤하우스	2019
124	(임유정의) 목소리 트레이닝 / 임유정	원앤원북스	2019
125	(왜 짜증을 내냐고?) 그냥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 방연주	북포스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26	스물토크: 대화가 쉬워지는 말의 공식 / 임철웅	42미디어콘텐츠	2019
127	사랑이더라: 김양숙 시집 / 김양숙	세종출판사	2018
128	양들의 사회학: 김지녀 시집 / 김지녀	문학과지성사	2014
129	저녁, 십분 전 여덟 시: 마선숙 시집 / 마선숙	시와문화사	2018
130	사막에서 열흘: 실크로드 여행시집 / 김금용	책만드는집	2017
131	상상 / 강인한	상상인	2019
132	비상구를 찾다: 성정우 시집 / 송정우	청어	2019
133	간절함: 신달자 시집 / 신달자	민음사	2019
134	웃기는 짬뽕: 신미균 시집 / 신미균	푸른사상	2015
135	곡마단 뒷마당엔 말이 한 마리 있었네: 이진청 시집 / 이진청	서정시학	2017
136	따뜻한 편지: 이영춘 시집 / 이영춘	서정시학	2019
137	오답으로 출렁이는 저 무성함: 이채민 시집 / 이채민	미네르바	2019
138	길 위에 시간을 묻다: 최금녀 시집 / 최금녀	문학세계사	2012
139	표현하는 사람들 100 / 강경호	시와표현	2020
140	어둠 짙을수록 더욱 빛나지: 김지현 수필선 / 김지현	수필과비평사	2018
141	여행의 이유: 김영하 산문 / 김영하	문학동네	2019
142	처음이라는 선물: 원은희 그림일기 / 원은희	연인M&B	2015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Legal TimesV141	(주)리결타임즈	월간
2	거래가격 592호	(주)거래가격	월간
3	고시계 758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노동법률 2020.4.	中央經濟社	월간
5	문학사상 570호, 571호	문학사상사	월간

	서명	발간처	간기
6	사법행정제 61권 제4호(712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7	속보삼일총서 1563, 1564, 1565, 1566+부록, 1567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스포츠와 법 23권 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인문 트법학회	연3회
9	시사저널 1589, 1590, 1591, 1592, 1593	독립신문사	주간
10	신동아 2020.5.	(주)동아피디에스	월간
11	월간 인사관리 2020.5.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2	월간조선 2020년 5월	조선일보사	월간
13	월간중앙 2020.05.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4	이코노미스트 1528호, 1530호, 1529호, 1531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5	조세총서 DB2020.3.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16	종합물가정보 594호 I,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17	주간조선 N2602, N2603, N2604, N2605	조선일보사	주간
18	출판저널 V516	(주)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19	현대문학 2020년 5월	(주)현대문학	월간

■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68호	總合勞動研究所	계간
2	刑事辯護 N101	現代人文社	계간
3	別冊 商事法務 N447, 448, 449, 450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4	登記情報 60권 제1, 2, 3, 4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5	別冊 N,B,L,N171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6	ジュリスト 1540, 1541, 1542, 1543, 1544호	有斐閣	격주간
7	別冊 ジュリスト V247	有斐閣	부정간

	서명	발간처	간기
8	交通法研究 48호	日本交通法學會(有斐閣)	연간
9	國家學會雜誌 133권 1-2호	有斐閣	격월간
10	國際法外交雜誌 118권 4호	有斐閣	계간
11	國際商事法務 V48 N1, N2, N3, N4	國際商事法研究所	월간
12	金融·商事判例 N1586, N1587, N1588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3	金融法務事情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951+52, 1953, 1954, 1955, 1956, 1957호	勞動旬報社	순간
15	登記研究 863호, 864, 865호	テイハン	월간
16	文藝春秋 2020.1월, 2월, 3월, 4월, 5월	文藝春秋	월간
17	民商法雜誌 155권6호, 156권1호	有斐閣	격월간
18	發明 V117 N1, N2, N3, N4	發明協會	월간
19	法律のひろば V73 N1, N2, N3, N4	きょうせい	월간
20	法律時報 92권 1호, 2호, 3호, 4호	日本評論社	월간
21	法律判例文獻情報 496호	第一法規	월간
22	法曹時報 72권 1호, 2호, 3호, 4호	法曹會	월간
23	法學セミナー-V65 N1(780호), N2(781호), N3(782호), N4(783호), N5호(784호)	日本評論社	월간
24	法學教室 472호, 473호, 474호, 475호 + 별책	有斐閣	월간
25	法學論叢 186권 4호	有斐閣	월간
26	法學新報 126권 11-12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7	法學協會雜誌 137권 1호, 2호, 3호	有斐閣	월간
28	比較法研究 81호	有斐閣	연간
29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3권4호, 34권 1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계간
30	銀行法務 21 851호, 852호, 853, 855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32	日本教育法學會年報 49호	日本經濟法學會	연간

	서명	발간처	간기
32	立教法學 101호, 102호	立教法學會(有斐閣)	계간
33	自治研究 96권 1호, 2호, 3호	良書普及會	월간
34	租稅研究 846호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35	判例タイムズ 1466, 1467, 1468, 1469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6	判例時報 N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특별부록, 2431+2432, 2433, 2434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地方自治 N457	きょうせい	월간
38	海事法研究會誌 246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39	刑法雜誌 58권3호	日本刑法學會	계간
40	刑事法ジャーナル V63	イウス出版	계간
41	戶籍 977호, 978호, 979호, 980호	テイハン	월간
42	世界 N928, 929, 930, 931, 932	岩波書店	월간
43	戶籍時報 N793	日本加除出版	월간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9.3월	New York Law Pub.	주간
2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59, N960	Editorial Aranzadi S.A.	격주간
3	Air and Space LawVOL45 N1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4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B220 H1	Mohr Siebeck	격월간
5	Archiv Für Kriminologie ;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 Bd245H1-2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6	Betriebs-Berater (BB)J75 H1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서명	발간처	간기
7	Bundesgesetzblatt:Part1&Part2 I .Nr.1~13, II .Nr.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8	Der Spiegel2019 N1, N9/ 2020 N1~15	Spiegel	주간
9	Entertainment Law ReviewV31 I1	Sweet & Mawell	연8회
10	EuroparechtJ55 H1	Nomos-Verl	격월간
11	European Law ReviewV45 N1	Sweet & Mawell	격월간
12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20 H1, H2, H3	Stollfuß	월간
1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V37 N1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14	Journal of World TradeV54 I 1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15	Juristen Zeitung (JZ)J75 H1, 2, 3, 4, 5, 6	J.C.B. Mohr	반월간
16	Kritische JustizJ53 H1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17	Nj Neue JustizJ74 H1, H2, H3	Nomos	월간
18	Public law2019 january, 2020 january, 2020 April	Sweet & Maxwell	계간
19	Rabels Zeitschrift : fu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B84 H1	J. C. B. Mohr	계간
20	Recueil des coursN396, 397, 398, 399, 400, 401	Hague Academy	부정기
21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2019 N4	Dalloz	계간
2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N262	Trimestrielle	계간
23	RW(Rechtswissenschaft startet)J10 H4	Verlagsgesellschaft mbH & co.KG	계간

	서명	발간처	간기
24	The EconomistV434 N9175(1.4/1.10), V434 N9176(1.11/1.17), V434 N9177(1.18/1.24), V434 N9178(1.25/1.31), V434 N9179(2.1/2.7), V434 N9180(2.8/2.14), V434 N9181(2.15/2.21), V434 N9182(2.22/2.28), V434 N9183(2.29/3.6), V434 N9184(3.7/3.13), V434 N9186(3.21/3.27), V434 N9187(3.28/4.3), V435 N9188(4.4/4.10), V435 N9189(4.11/4.17)	The Economist Group	주간
25	The Law quarterly ReviewVol 135 (2019 january), Vol 136 (2020 April)	Sweet & Mawell	계간
26	TIME3, 30	Time Asia	주간
27	VersicherungsrechtJ71 H6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28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J74 N1~13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29	Wuw (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J70 H1, H2, H3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30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B184 H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32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B131 H4	WalterGruyter	계간
32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J35 H1	C.F. Müller	계간
33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vol39 N2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34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B119 H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